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(배명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11월 일
제 출 자 : 배명호 의원 외 6인

1. 개정이유

○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지급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(안 제8조제1항)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유족에 대한 수당지급에서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로 확대 지급

나. 보훈예우수당 인상(안 제8조제2항)
- “월 3만원”에서 “월 5만원”으로 인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・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나. 예산조치 : 관련 부서와 합의 예산반영
다. 기 타
・ 조례안예고 : 의견 없음〔2017.11. 9~11.13.(5일간)〕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- 안 제8조제1항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유족에 대한 수당지급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로 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,
-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현 “월 3만원”에서 “월 5만원”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보훈예우수당 지급액과 지급대상자 범위가 경북 시·군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우리군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수당 인상과 80여명의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